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23
----------	------

2018년 2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12월 18일, 최웅식 의원 외 11명
- 나. 회부일자 : 2017년 12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8년 2월 22일 상정·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최웅식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시가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에너지절약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의 금융자금 외의 민간자금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한계가 있는 에너지 빈곤층에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복지사업의 구체적 내용,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서울시가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고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의 금융자금 외의 민간자금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제2항)
- 에너지 빈곤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 추진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0조, 제28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 1) 신·구조문 대비표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 가.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시가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의 금융자금 외의 민간자금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의 복지정책 만으로 한계가 있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시민 주도의 에너지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복지사업의 구체적 내용,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에너지절약형설비 설치 및 금융자금 외의 민간 자금 활용(안 제15조제2항)
  - 서울시는 공공조명의 LED조명 교체를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14.12.8)하고 우리은행이 설립('15.3.27)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밝은 서울LED(주)를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sup>1)</sup>해 오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우리은행과 SPC는 민간영리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LED조명 구매에 따른 계약사무 위탁이 부적절하다는 감사결과를 통보('17.3.23) 받은 바 있음.

이에 서울시는 2017년 5월 우리은행과 상호 합의를 통해 계약사무를

---

1) LED조명 보급 수량 134,322개(재정 1,636개 + SPC 132,686개), 사업비 85억 14백만원(재정 7억 5천만원 + SPC 77억 64백만원), 연간 전력 절감액 21억 3천만원, 회수기간 4년

SPC에서 주무관청 회계관계공무원 또는 위탁 전문기관으로 하고 우리은행 (SPC)의 업무범위를 재원조달로 한정하는 등 업무협약 내용 일부를 변경 하였지만, 법률자문<sup>2)</sup> 결과 관련 조례 개정 없이 업무협약 변경만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이 있는 바,

현행 조례 제15조제2항 개정<sup>3)</sup>을 통해 동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재규정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원 조달을 외부사업자의 금융자금<sup>4)</sup>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동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과 같이 에너지절약형설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며, 외부사업자의 금융자금 외에 민간자금까지 확대 조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금융자금 또한 민간자금을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자금과 민간자금을 구분할 필요 없이 민간자금으로만 명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2) 에너지복지사업 근거 규정 등 신설(안 제26조의2)

-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여름철, 겨울철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

2) 의뢰내용 : 변경업무협약에 의한 공공조명 LED교체 사업 시행 가능 여부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5조제2항은 더 이상 동 사업추진 근거가 되기 어려우며, 서울시가 동 사업을 위해 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 외부사업자의 역할을 단순 재원조달로 한정하고 계약사무의 주체를 서울시로 함

4) '17년말 기준 우리은행에서 77억 64백만원 재원조달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sup>5)</sup>’이 서울시 전체 가구의 10.3%(3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sup>6)</sup>된 바 있음.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시민 주도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모금·집행하여 11만 7천여 가구의 주거 에너지 효율화와 폭염 및 한파대비 에너지 빈곤층 지원 사업(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최근 3년간 모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현금 기부			물품기부 (기업)
	소계	개인(단체)	기업	
2,369	760	126	634	1,609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계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LED 조명교체		태양광 설비지원		기타 (고효율제품 교체, 냉난방물품지원 등)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117,408	1,872	75	148	2,427	113	8,704	409	106,202	1,202

○ 그러나 에너지 빈곤층 지원 사업은 매년 운영단체를 공모하여 선정<sup>7)</sup>하고 있고 해당 단체가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 에너지 빈곤층 지원대상, 지원유형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sup>8)</sup> 없이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한계가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동 개정안과 같이 조례에 에너지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sup>9)</sup>, 추진

5)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 등 광열비로 지출하는 저소득 가구

6) '10년, 서울연구원 「서울시에너지복지 정책방향」

7)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18.2.1 ~ '19.1.31)

8) 시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대한 근거는 동 조례(제8조제2항제5~6호)에 규정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9) 에너지 공급지원,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주택개량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현 운영단체와 같이 법령<sup>10)</sup>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sup>11)</sup> 지원은 불가하여 운영단체 선정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활한 운영단체 선정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3)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0조 및 제28조)

-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13.3.23) 사항을 반영하여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10) 현 운영단체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비 지원 가능(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1) 보조단체의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에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시 조달하는 재원에 있어 금융자금 또한 민간자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민간자금으로 통일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중 운영비로 오해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23
----------	------------

제안년월일 : 2018년 2월 22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시 조달하는 재원에 있어 금융자금 또한 민간자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민간자금으로 통일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중 운영비로 오해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함.

## 2. 주요 골자

- 금융자금 또는 민간자금을 민간자금으로 통일함(안 제15조제2항)
- 운영비로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26조의2제2항)

## 3. 참고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2항 중 “금융자금 또는 민간자금”을 “민간자금”으로 한다.

안 제26조의2제2항 중 “운영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5조(공공부분 에너지절약)</p> <p>① (생 략)</p> <p>② 시는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u>금융자금을 조달하여</u> 공공부분에 에너지절약형설비(LED조명 등)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u>분할하여 상환 받는</u>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15조(공공부분 에너지절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조달한 금융자금 또는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u> ----- ----- ----- <u>외부사업자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공공부분 에너지절약)</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u>조달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u> ----- ----- ----- <u>외부사업자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u> ----- -----.</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20조(점검방법)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 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u>지식경제부</u> 고시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p>	<p>제20조(점검방법) ----- ----- ----- ----- <u>산업통상자원부</u> ----- ----- -----.</p>	<p>제20조(점검방법) (개정안과 같음)</p>

<신 설>

제2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

의 실시) 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5.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

의 실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에너지사용 제한) 시장은 국내외 에너지 사용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업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제28조(에너지사용 제한) -----  
-----  
-----  
-----  
-----  
-----  
-----

제28조(에너지사용 제한)  
(개정안과 같음)

와 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  
----- 산업통상자원부  
-----.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금융자금을 조달하여”를 “조달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분할하여 상환받는다”를 “외부사업자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5.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공공부분 에너지절약) ① (생략)</p> <p>② 시는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u>금융자금을 조달하여</u> 공공부분에 에너지절약형설비(LED조명 등)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u>분할하여 상환받는</u>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5조(공공부분 에너지절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조달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u> ----- ----- ----- <u>외부사업자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u> ----- ----- 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점검방법)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u>지식경제부</u> 고시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p>	<p>제20조(점검방법) ----- ----- ----- <u>산업통상자원부</u> -----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u>시장은 에너지 빈곤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u></li> <li>2. <u>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u></li> <li>3. <u>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u></li> </ol>

사업

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5.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에너지사용 제한) 시장은 국내외 에  
너지 사용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  
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기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업자 또  
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28조(에너지사용 제한) -----

-----  
-----  
-----  
-----  
-----

----- 산업통상자  
원부-----.

1. ~ 4. (현행과 같음)